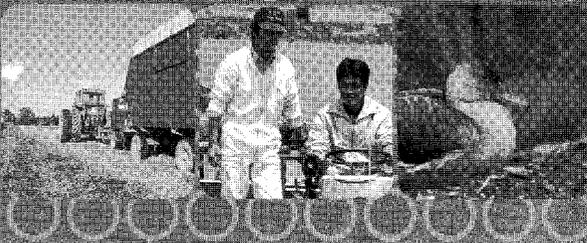




[축산법령]

종계장·부화장 방역관리요령중 개정(안)



가축전염병예방법, 제3조제2항,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"종계장·부화장 방역관리요령(농림부고시 제 2004-74호, 2004.12.6)"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한다.
- 2009년 9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-

종계장·부화장방역관리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내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검사방법) ① 추백리·가금티프스 검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실시한다.

1. 1차검사 : 급속혈청평판응집반응법
 2. 2차검사 : 효소면역법(ELISA)
 3. 3차검사 : 균분리검사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시료에 대하여는 2차검사를 실시한다
-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2차 검사에서 1차 검사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30%미만인 계사는 3차 검사를 실시한다.
- ④ 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3차 검사(균분리 검사)는 별표 1의 방법으로 실시하며, 2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개체가 4수 이상이면 최소 4수를, 4수 미만이면 해당 개체 모두를 검사한다.

제11조(판정기준) ① 제10조의 검사방법별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2차 검사결과 1차검사 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

양성율이 30% 이상인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
2. 3차 검사결과 1수 이상에서 균분리가 된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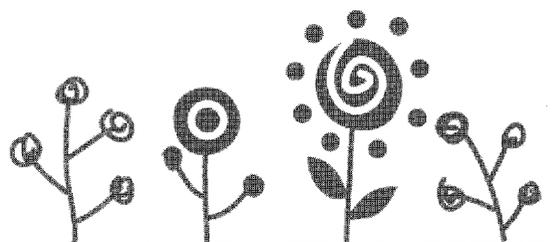
② 1차 및 2차 검사에서 양성율이 30%미만인 계사에 대하여 3차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음성 계군으로 판정한다.

제12조(방역관리상황 점검) 검사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음성계군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하여 방역관리 상황점검을 위하여 폐사계 발생 등에 따른 병성감정 시 균분리 검사를 실시하거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병성감정으로 균분리가 된 계사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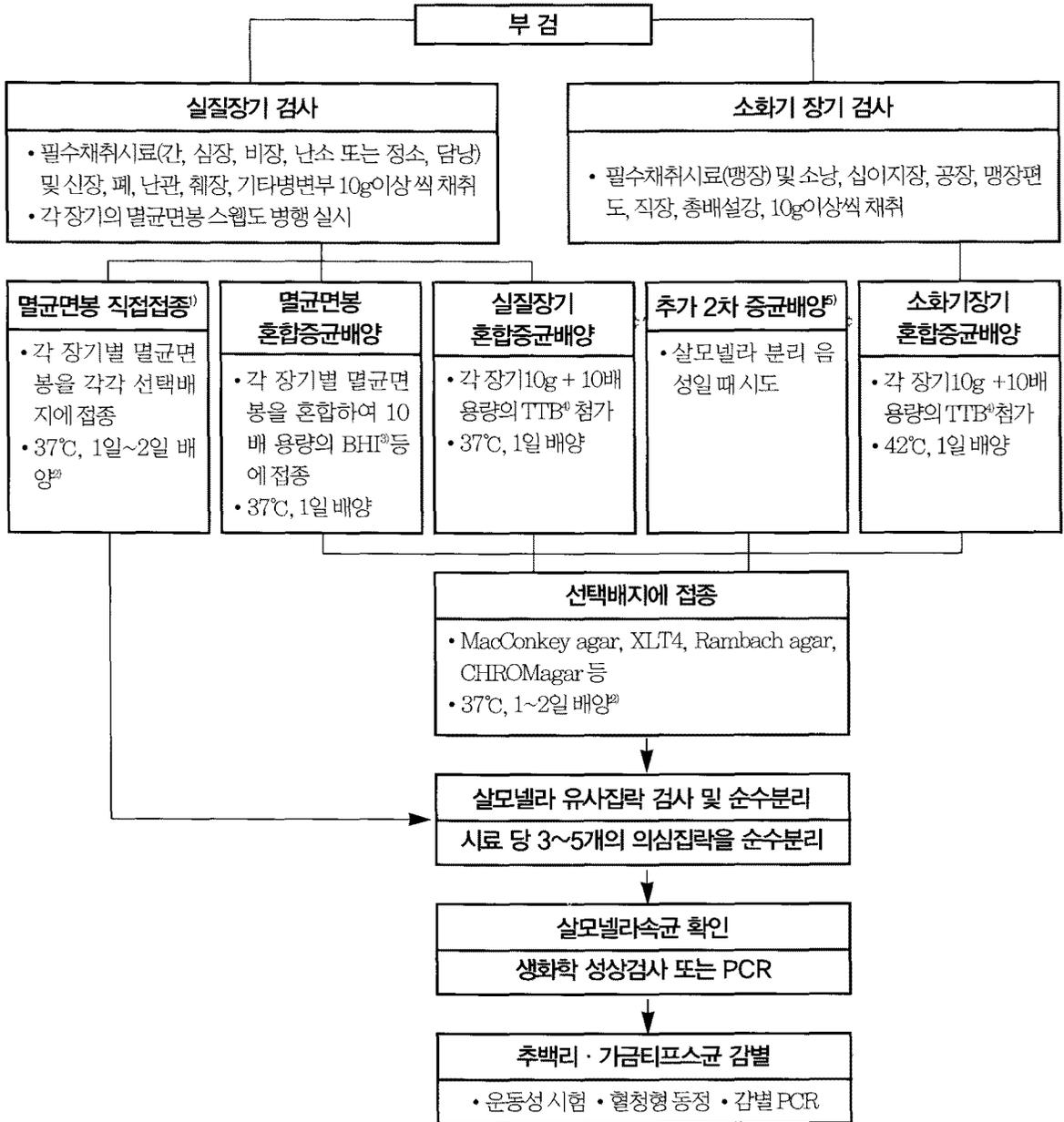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1] 살모넬라 균분리 검사법 (제10조 관련)



1) 병변이 있을 경우에만 직접접종 실시
 2) 추백리·가금티프스균은 발육속도와 H₂S 산생능이 약하므로 1일 배양 후 살모넬라 유사집락이 관찰되지 않으면 추가배양 실시
 3) brain-heart infusion
 4) tetrathionate broth
 5) 추가 2차 중균배양: 실질장기 또는 소화기장기 혼합중균배양에서 살모넬라균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중균배양액을 추가로 5~7일간 실온에 보관한 뒤 1 mL를 새로운 TTB 10 mL에 접종하여 37°C, 1일 배양한 후 선택배지에 접종 실시

현 행

제10조(검사방법) 추백리·가금티프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실시하며, 1차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시료에 대하여 2차검사를 실시한다.

1. 1차검사: 급속전혈평판응집반응법 또는 급속혈청평판응집반응법
2. 2차검사: 효소면역법(ELISA)

제11조(판정기준) ①제10조의 검사방법별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1차 및 2차 검사결과 모두 양성인 경우 양성계로 판정
2. 1차 검사 양성이었으나 2차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음성계로 판정

②검사결과 양성율의 판정은 계사별로 실시하며, 양성율이 10% 이상인 계사는 양성계군으로,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가 하나도 없는 계사는 음성계군으로 판정한다.

③검사기관은 양성율이 10% 미만이나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가 있는 계사에 대하여 검사종료후 1주일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는 재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계사에서 사육중인 닭에 대하여는 종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재검사) ①재검사는 검사결과와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사단위로 300수 이상을 고르게 무작위로 채취하여 제10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.

②검사기관은 재검사결과 양성율이 2% 이상인 계사는 양성계군으로,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가 하나도 없는 계사는 음성계군으로 각각 판정한다.

③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검사수수의 2% 미만인 계사는 의양성계군으로 판정하고, 시장·군수의 지속적인 감독하에 종계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개 정 (안)

제10조(검사방법) ①추백리·가금티프스 검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실시한다.

1. 1차검사: 급속혈청평판응집반응법
2. 2차검사: 효소면역법(ELISA)
3. 3차검사: 균분리검사

②제1항제1호에 따른 1차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시료에 대하여는 2차검사를 실시한다

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2차 검사에서 1차 검사 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30%미만인 계사는 3차 검사를 실시한다.

④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3차 검사(균분리 검사)는 별표 1의 방법으로 실시하며, 2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가 4수 이상이면 최소 4수를, 4수 미만이면 해당 개체 모두를 검사한다.

제11조(판정기준) ①제10조의 검사방법별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2차 검사결과 1차검사 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30% 이상인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
2. 3차 검사결과 1수 이상에서 균분리가 된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

②1차 및 2차 검사에서 양성율이 30%미만인 계사에 대하여 3차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음성계군으로 판정한다. <삭 제>

<삭 제>

제12조(방역관리상황 점검) 검사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음성계군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하여 방역관리 상황점검을 위하여 폐사계 발생 등에 따른 병성감정 시 균분리 검사를 실시하거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병성감정으로 균분리가 된 계사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.